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 보

**제521호 2016. 1. 28. (목)**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6- 8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시정명령)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 
 송달 공고 ..... 2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##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시정명령)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 (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미이행)한 우리 군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행정처분(시정명령)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### □ 행정처분(시정명령)사전통지서 공시송달

#### 1. 대상업체

상 호 (대표자)	업 종 (등록 번호)	영업 소재지	처분 내용 (처분사유)	비 고
하나에너지 (홍**)	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(부산강서2009-24-01)	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3 상가 110호	시정명령 (주기적신고 미이행)	.

2. 공고기간 : 2016. 1. 22. ~ 2016. 2. 5. (15일간)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시정명령 사전통보 : 거창군 건설과-973(2016. 1. 15.)

나. 시정명령 내용 :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(주기적 신고) 이행

다. 미이행시 처벌내용 : 건설업 등록말소(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)

4.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(☎055-940-35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1. 22.

# 거창군수